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50774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이상호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444,4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왔는데,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양도되었고, 각 양도인들은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차수	일시	양수인
1차	2010. 11. 11.	주식회사 E
2차	2011. 12. 30.	F 유한회사
3차	2013. 5. 29.	원고

나. 원고는 2016. 6. 1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444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6. ‘C은 원고에게 80,237,132원 및 그 중 20,411,429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3. 9. 2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처 H, 자녀들인 C, 피고, I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는 2013. 9. 27.경 있었는데, 원고는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2016년경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 사건 분할협의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2013. 9. 27.경 있었다거나, 이 사건 소제기 기준으로 원고가 그 1년 이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 사건 분할협이가 그 5년 이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04. 10.경 망인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는 C의 상속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상속포기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당시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4. 10.경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J 주식회사의 망인에 대한 채권을 대부분 변제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H, C, I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C 외에도 망인의 처 H, 망인의 자녀 I 역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분할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별 지 목 록

1. 1층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166.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4352000분의75059

